

의안번호	2126081
의 퇴 인	박성민 의원
회 답 일	2024. 1. 22.
추계번호	23F5119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율 상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2025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·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상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4년 20.1억원, 2029년 1.2억원 등 2024년에서 2029년까지 6년간 총 50.2억원(연평균 8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(35%→50%)할 경우 취득세수는 2024년에서 2025년까지 2년간 총 37.8억원(연평균 18.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5년간 감면하는 재산세 감면율을 상향(비수도권 60%→75%)할 경우 재산세수는 2024년에서 2029년까지 6년간 총 12.4억원(연평균 2.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	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상향 (안 제78조제3항)	취득세	-18.9	-18.9	-	-	-	-	-37.8	-18.9
	재산세	-1.2	-2.5	-2.5	-2.5	-2.5	-1.2	-12.4	-2.1
	계	-20.1	-21.4	-2.5	-2.5	-2.5	-1.2	-50.2	-8.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8조제3항 (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)	○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·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율 상향 - 감면율: (현행) 취득세 35%, 재산세 5년 35%(수도권 외 60%) →(개정안) 취득세 50%, 재산세 5년 35%(수도권 외 75%) - 적용기한: 2025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78조제3항 (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상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

- (취득세)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세통계연감」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－ 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의 직접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연평균 감면액('21년 이상치 제외)은 44억원 수준
- (재산세)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세통계연감」 감면실적은 과거 5년간 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에게 적용된 감면액의 합계액이므로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연평균 감면액을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한 감면액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－ 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첫해부터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, 세수효과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 - － 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의 직접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의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연평균 감면액은 29억원 수준
- 지역별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수는 국토교통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11월말 기준 현황이 2025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

[표 2]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현황(2023년 11월말 기준)¹⁾

		산업단지(A) ²⁾	산업기술단지(B) ³⁾	계(C=A+B)
전국		667	19	686 (100.0)
수도권	서울	4	1	5
	인천	13	1	14
	경기	126	2	128
	소계	143	4	147 (21.4)
수도권 외	부산	28	1	29
	대구	12	1	13
	광주	6	1	7
	대전	5	1	6
	울산	17	1	18
	세종	8	1	9
	강원	24	1	25
	충북	76	1	77
	충남	91	1	92
	전북	16	1	17
	전남	32	1	33
	경북	72	2	74
	경남	134	1	135
	제주	3	1	4
	소계	524	15	539 (78.6)

주: 1. 괄호()는 전국 산업단지 등에서 수도권/수도권 외 지역의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

1) 지방세 감면을 상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

2) 산업단지란 산업시설용지 및 이와 관련된 교육·연구·업무·지원·정보처리·유통 시설,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·문화·환경·공원녹지·의료·관광·체육·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·개발되는 일단(一團)의 토지를 의미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)

3) 산업기술단지란 기업·대학·연구소·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인적자원 개발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·건물·시설 등의 집합체를 의미(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)

자료: 국토교통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

□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수효과는 2024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○ 개정안은 재산세 과세기준일(2024.6.1) 이전 통과 및 공포되어 2024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실적

□ 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(취득세) 2022년 기준 42억원이 감면되었으며 최근 3년(2020~2022년) 연평균 감면액('21년 이상치 제외)은 44억원 수준
- (재산세) 2022년 기준 22억원이 감면되었으며 최근 3년(2020~2022년) 연평균 감면액은 29억원 수준

[표 3] 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: 2020~2022년

	2018	2019	2020	2021	2022	(단위: 억원) '20~'22 연평균
취득세	92	56	46	121	42	44 ¹⁾
재산세	127	75	36	29	22	29

주: 1) 2021년 취득세 감면액은 이상치로 간주하여 연평균 감면액 계산 시 제외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방법

□ (취득세)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연평균 감면액을 바탕으로 감면율
상향분(15%p(35%→50%))을 적용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

- 2024년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액 변동
: 18.9억원 = 63.0억원(개정안) - 44.1억원(현행)

□ (재산세)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연평균 감면액을 바탕으로 감면액
을 1년 단위로 환산한 후 비수도권 산업단지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
상향분(15%p(60%→75%))을 적용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

- 1년 단위 환산액: 수도권 감면액 0.8억원*, 비수도권 감면액 5.0억원**

$$* 0.8\text{억원} = 29\text{억원} \div 5\text{년} \div \frac{\text{수도권 비중}(21.4\%) \times 35\%}{\text{수도권 비중}(21.4\%) \times 35\% + \text{비수도권 비중}(78.6\%) \times 60\%}$$

$$** 5.0\text{억원} = 29\text{억원} \div 5\text{년} \div \frac{\text{비수도권 비중}(78.6\%) \times 60\%}{\text{수도권 비중}(21.4\%) \times 35\% + \text{비수도권 비중}(78.6\%) \times 60\%}$$

- 2022년 기준 감면실적의 1년 단위 환산액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산업단지·산업기술단지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상향분(15%p(60%→75%))을 적용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
 - 2024년 신규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액 변동: 1.2억원 = 6.2억원(개정안) - 5.0억원(현행)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산세 감면액 추계: 2024~2029년¹⁾

구분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2024년 신규취득	1.2	1.2	1.2	1.2	1.2	-
2025년 신규취득	-	1.2	1.2	1.2	1.2	1.2
계	1.2	2.5	2.5	2.5	2.5	1.2

주: 1) 개정안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상향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단지·산업기술단지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비수도권 산업단지·산업기술단지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바탕으로 추계

[표 7] 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 관련 지방세 감면액 추계: 2024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취득세(A)	18.9	18.9	-	-	-	-
재산세(B) ¹⁾	1.2	2.5	2.5	2.5	2.5	1.2
계(C=A+B)	20.1	21.4	2.5	2.5	2.5	1.2

주: 1)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므로 2029년까지 세수효과 발생

(3) 추계결과

- 2025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·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상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4년 20.1억원, 2029년 1.2억원 등 2024년에서 2029년까지 6년간 총 50.2억원(연평균 8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(35%→50%)할 경우 취득세수는 2024년에서 2025년까지 2년간 총 37.8억원(연평균 18.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5년간 감면하는 재산세 감면율을 상향(비수도권 60%→75%)할 경우 재산세수는 2024년에서 2029년까지 6년간 총 12.4억원(연평균 2.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	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상향 (안 제78조제3항)	취득세	-18.9	-18.9	-	-	-	-	-37.8	-18.9
	재산세	-1.2	-2.5	-2.5	-2.5	-2.5	-1.2	-12.4	-2.1
	계	-20.1	-21.4	-2.5	-2.5	-2.5	-1.2	-50.2	-8.4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고은비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고은비	02-6788-4839	eunbi15@assembly.go.kr